

겸임교수에 관한 규정

(제정 1997. 9. 1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실무, 실습,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 및 그 밖의 특수목적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겸임교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3.1., 2019.6.25.>

제2조 삭제 <2016.3.1.>

제3조(자격) 겸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6.25.>

1.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2. 교수 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
3.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(유사경력 3년 이상)

제4조(임무 및 권리) ① 겸임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3.1., 2019.6.25.>

1. 강의 또는 실험 실습
2. 대학원생의 논문지도
3.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
4. 그 밖에 교육 활동 지원

② 겸임교수는 본교의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6.3.1.>

제5조(임용절차) ① 겸임교수는 교무처장 또는 해당 대학(원)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6.3.1., 2020.4.14.>

② 삭제 <2016.3.1.>

③ 겸임교수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3.1.>

1. 겸임교수 임용신청서 1부
2. 이력서 1부
3. 학력 증명서 각1부
4. 재직증명서 1부
5. 본직 기관장 동의서 1부
6. 추천서 1부 (추천시에 한함)

④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은 겸임교수 활용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3.1.>

제6조(임용기간) 임용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하되, 재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6.3.1., 2019.6.25.>

제7조(면직) 총장은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시킬 수 있다. <개정 2016.3.1.>

1. 본직 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

2. 교무처장 또는 해당 대학(원)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<개정 2016.3.1., 2020.4.14.>

제8조(처우) 겸임교수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6.3.1.>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 규정 제4조 ②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겸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은 겸임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, 처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]

겸임교수 임용신청서

인적사항	성명	(한글)			주민등록번호		
		(한자) (영자)			-		
	소속기관명			직위		전화번호	
학력	출신학교			입학년월	졸업년월	전공	학위명
	대학						
	대학원	석사					
		박사					
임용예정 직급관련 경력	겸임교수 임용예정자 경력						
	교육경력		연구경력		계	비고	
주요경력							
임용희망 대학							
임용추천 내용	전공				전공분야		
	임용기간	. . 부터 . . 까지					
	학과장 동의	학과장 (인)					
학과장 견해							

위와 같이 겸임교수 임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직위 :
성명 : (인)

[별지 제2호]

겸임교수 활용계획서

대 학			학 과			전 공 분 야		
활 용 계 획								
인적사항	성 명	(한글)				주민등록번호		
		(한자) (영자)				-		
	소속기관명					직 위		
담당업무	강의	대학	개설대학	교 과 목 명		구분	학점	주당시간수
		대학원	개설대학원	교 과 목 명		구분	학점	주당시간수
		논문 지도	논 지 도 교수					
	논 문 공 동 지 도 교수							
	공동 연구	공동연구자						
		과 제 명						
	기 타							
활용기간								
학과장 동의	학과장 (인)							
활용의 필요성								

위와 같이 겸임교수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직 위 :

성 명 : (인)

<별지 제3호>

겸임교수 임용 연장 추천서

소 속	대학		학과		직 급		
임용연장 대 상 자	성 명	(한 글)			주민등록번호		
		(한 자) (영자)			-		
	소속기관명			전화번호			직위(급)
당 초 임용기간	: : : 부터 : : : 까지(년)			연 장 추천기간	: : : 부터 : : : 까지		
담당업무	강 의	대학	개설대학	교 과 목 명	구분	학점	주당시간수
		대학원	개설대학원	교 과 목 명	구분	학점	주당시간수
	논 문 지 도	논 지 도 교수					
		논문공 동 지 도 교수					
	공 동 연 구	공동연구자					
		과 제 명					
기 타							
학과장 동의	학과장 (인)						
임용 연장의 필요성 및 의견							

위와 같이 겸임교수 대상자의 임용 연장 추천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직 위 :
성 명 : (인)

<별지 제4호>

겸 임 동 의 서

겸임대상자	소 속		직위(직급)	
	성 명		생년월일	
겸 임 소 속	전주대학교 대학 학과			
소속기관주소			전화번호	
위 사람의 전주대학교 겸임교수 임용에 동의합니다.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(인)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				